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3. 6.



환경부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1. 목 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적용범위	2
제2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3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및 부착 시기	3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면제	5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절차	9
4.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12
5.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위치 및 방법	13
6.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유지·관리	22
부록. 관련서식 및 참고자료	26
[서식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26
[서식 2]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행정기관 제출용)	31
[서식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보완 요구서	35
[서식 4]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36
[서식 5]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37
[참 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체크리스트	38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 사업장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대기배출·방지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이라 함)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시행규칙 [별표 3])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11호)

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이하“방지시설”이라 함)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시행규칙 [별표 4])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12호)

다. 대기오염 저감시설(이하“저감시설”이라 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함

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이하“pH”라고 함)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함(법 제17조제1항제3호)

마.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이하“그린링크”라고 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 및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말함

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자료를 수집 후 평균 등의 자료를 생성하여 유·무선 방식으로 그린링크 시스템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함

사. 가상사설망(이하“VPN(Virtual Private Network)”이라 함)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를 말함

아. 상태표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송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된 데이터(점검중, 전원단절, 통신불량, 비정상범위, 정상 등)를 말함

자. 가동정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된 데이터(배출·방지시설 전류값)를 말함

차. 상태정보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된 데이터[압력·온도(여과 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pH(흡수에 의한 시설), 고전압 전류값(전기집진시설), 순환펌프 전류값(세정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를 말함

3. 적용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시행령 제17조제6항과 시행규칙 제37조의3 단서 등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함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참고
- 습식 파쇄·분쇄 사업장은 “습식시설 대기배출사업장 신고 관련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 가이드라인(2021.11, 환경부)” 및 “습식 파쇄·분쇄시설 관리 개선방안(2022.12, 환경부)”참고

제2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 「대기환경보전법」
 -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94조(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 제19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제66조(업무의 위탁)
 - 부칙<제32621호> 제2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 [별표 3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시기 및 부착유예
 -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7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
 - [별표 9]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 [별표 9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습식시설 대기배출사업장 신고 관련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및 자가 측정 면제 가이드라인(2021.11, 환경부)
- 습식 파쇄·분쇄시설 관리 개선방안(2022.12, 환경부)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2022.12, 환경부)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및 부착 시기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시행규칙 [별표 9의2])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해야 함

방지시설명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1. 원심력집진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전류계	전류계
2. 세정집진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전류계	전류계
3. 여과집진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5호)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4. 전기집진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전류계	전류계
5. 흡수에 의한 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8호)	전류계	전류계, pH계
6. 흡착에 의한 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9호)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비고]

제3호에 따른 여과집진시설·제6호에 따른 흡착에 의한 시설 중 방지시설에 부착해야 하는 온도계와 제5호에 따른 흡수에 의한 시설 중 방지시설에 부착해야 하는 pH계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시기 및 부착유예(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함
- 2) 위 1)에도 불구하고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을 4종 또는 5종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함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경과조치, 시행령 [부칙] <제32621호, 2022.5.3>)

- 1) 시행령 시행('22.5.3.) 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함

- 2) [별표 1의3]에 따른 4종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시행령 시행일('22.5.3.)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함
- 3)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시행령 시행일('22.5.3.)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함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면제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면제(시행령 [별표 3의2])

1) 방지사설이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경우

- ①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을 방지사설로 처리 및 방지사설의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실시간 측정·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면제

2)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이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전류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①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전류계 부착 면제
- ②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지사설의 경우에는 가동정보 확인을 위한 전류계만 부착 면제
 - ※ 방지사설의 가동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상태정보(압력, 온도, pH, 고전압 전류값, 순환펌프 전류값 등) 측정기기는 방지사설별로 부착해야 함

3) 고정적인 전기사용 장치를 확인할 수 없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전류계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공정의 특성상 비고정 전기장치(콘센트 등)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전류계만 부착 면제
 - ※ 배출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형광등, 스위치 등은 전류계 부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② 방지시설의 상태정보(압력, 온도, pH, 고전압 전류값, 순환펌프 전류값 등)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는 부착
 - 여과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차압계, 온도계)
 - 흡수에 의한 시설(pH계, 전류계*)
 - 세정집진시설(전류계*)
 - 전기집진시설(전류계**)
 - * 흡수액 및 세정액 분사를 위한 순환펌프 가동 여부 확인
 - ** 고전압 발생기 가동 여부 확인

4) 방지시설과 연결되는 배출시설이 복수인 경우로서 배출시설의 통합전원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사유로 배출시설 중 일부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① 방지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복수의 배출시설에 통합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지시설과 연결된 배출시설의 통합전원에 전류계 부착 가능
 - ※ 방지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복수의 배출시설이 여러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룹별로 통합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룹별 통합전원에 전류계 부착 가능
- ② 복수의 배출시설이 연속공정으로만 운영되고, 개별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대표가 되는 지점에 전류계 부착 가능
 - ※ 공정도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

5)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① 배출시설의 폐쇄와 관련하여 폐쇄계획(예정일 포함)이 포함된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지자체 등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면제

6)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①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면제 가능
※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의 연간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연간 가동일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부착 면제 가능

7) 기타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경우

① 사업장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면제 가능
※ 공장 자동화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운영('22.5.3 이전) 중인 사업장으로 지자체 등이 배출 및 방지시설의 가동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이 가능한 사업장

② 군사시설 등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면제 가능

③ 복수의 방지시설에 통합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통합전원에 전류계(송풍시설에 한함) 부착 가능
※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상태정보(압력, 온도, pH, 고전압 전류값, 순환펌프 전류값 등) 측정기기는 방지시설별로 부착해야 함

④ 방지시설을 연중 상시(24시간) 가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지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에 한하여 전류계 부착 면제 가능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부착 면제 가능

- 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항상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개별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한하여 전류계 부착 면제 가능
 - ※ 공정 설명도, 전원 체계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부착 면제 가능
- 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측정기기의 부착을 위한 공정의 중지 등으로 제품 품질 등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방지)시설에 전류계 등 부착면제 가능
 - ※ 공정·시설 특성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부착 면제 가능. 단, 대정비 등을 위해 해당 공정의 가동을 중지하는 등 부착이 가능한 여건일 때에는 부착해야 함

나. 시설 특성에 따른 부착면제(시행규칙 [별표 9의2] 비고)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음

1) 온도계(여과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 ①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의 집진 필터 또는 흡착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온도 이내로 유입되거나 배출가스의 온도가 항상 일정한 경우에는 온도계 부착 면제 가능
 - ※ 고온의 배출가스가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로 유입될 경우에는 집진 필터 또는 흡착제 등의 손상이 우려되므로 방지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온도계 부착 필요

2) pH계(흡수에 의한 시설)

- ① 흡수액의 pH값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pH계 부착 면제 가능

3) 시설 특성상 측정기기의 부착이 물리적으로 곤란한 경우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절차

가. 사업장은 그린링크(www.greenlink.or.kr)에 신규 가입 후(담당자 변경 포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가입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필수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재직증명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양식(그린링크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가능)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가입 승인을 하여야 하고,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그린링크를 이용하여 반려 처리 및 사업장에 보완요청을 하여야 함

다. 보완요청을 받은 사업장은 서류를 보완하고 그린링크에 재등록하여야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는 그린링크에 등록된 서류가 이상이 없을 시, 가입 승인을 하여야 함

라. 사업장은 그린링크 신규 가입 완료 후, 사업장 및 측정기기 정보 등을 등록하고 지자체 등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서식 1)”, 측정항목별 측정기기의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서식 2)”,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Gateway 제조업체 직접 설치시 제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23.7.1부터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4종 사업장*은 가동개시 신고일 전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배출·방지시설의 운전 없이 최소한의 전원 공급만으로 그린링크에 정보를 전송하여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를 출력하여야 함

* 1종~3종 사업장을 4종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함

마. 지자체 등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서식 1)” 내용이 그린링크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고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서식 2)” 결과가 모두 정상일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기기 부착 완료일자 및 측정값 전송 시작일자를 통보 하여야 함

단, 사업장에서 제출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서식 1)”가 그린링크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 가동개시 신고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가 모두 정상이 아닐 경우, 지자체 등은 사업장에 보완을 요구(서식 3)하고 사업장은 보완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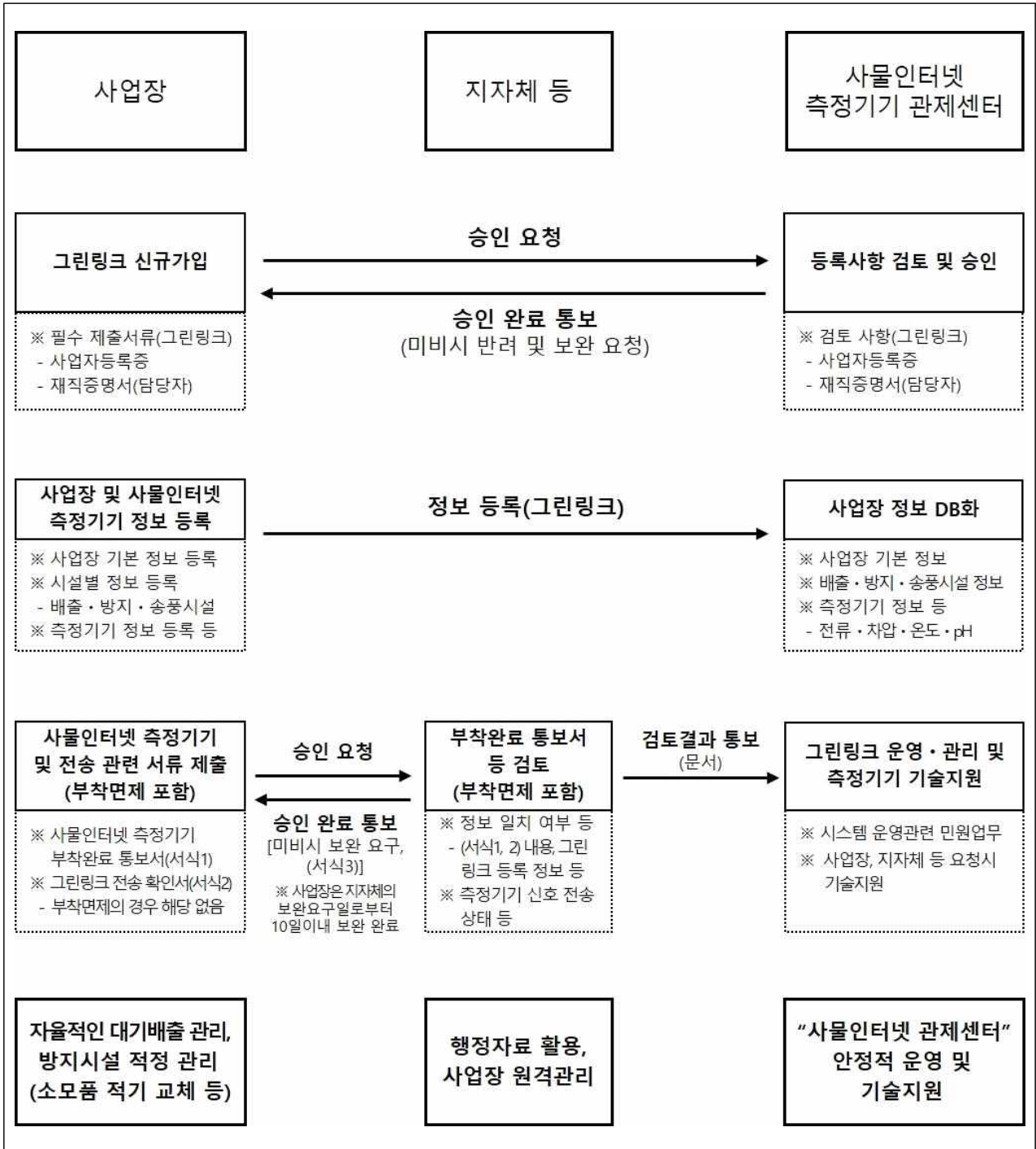
※ 부착완료일: 사업장이 지자체 등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서식 1)를 제출한 날

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 등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를 받으려는 사업장은 지자체 등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서식 1) (㉠ 부착면제 내역 작성)”와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및 증명 자료가 부착 면제 기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기기 부착 면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단, 지자체 등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서식 1)” 및 증명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업장에 보완을 요구(서식 3)하고 사업장은 보완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함(사업장이 부착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 등은 사업장에 부착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통보받은 부착기한 내 또는 별도의 부착기한이 없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부착완료 통보서 및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는 그린링크를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지자체 또는 사업장 요청 시 기술지원을 할 수 있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절차 및 업무흐름도 〉



4.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를 포함하여야 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 ¹⁾	0 ~ 600A	0 ~ 500mmH ₂ O	-40 ~ 100℃	0 ~ 14pH
오차 ²⁾	±5% 이내			
동작온도	-20 ~ 60℃	-20 ~ 60℃	-20 ~ 60℃	0 ~ 80℃
형식	-	-	Pt 100Ω, 열전대 등	-
온도보상	-	-	-	0 ~ 50℃ ³⁾
운용전원	-	DC24V(100 ~ 220VAC),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 ⁴⁾) 4 ~ 20mA (표시장치 ⁵⁾)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4) 출력신호는 Gateway와 호환이 가능한 신호이면 mA 이외의 출력신호도 가능함

5)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같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에 표시되는 가동정보와 상태정보의 단위는 그린링크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5.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위치 및 방법

가. 측정항목별

1) 전류계

- ① 전류계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상태(가동·중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및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함
- ② 전류계는 다른 설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 및 모든 전류계에는 해당 시설명을 표식하여야 함
 - 배출시설: 배출 1, 배출 2
 - 방지시설: 송풍 1, 송풍 2
 - 전기집진시설(고전압 발생기): 전기 1, 전기 2
 - 세정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순환펌프): 펌프 1, 펌프 2
- ③ 다수의 방지시설이 연결 및 2개 이상의 송풍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을 기준으로 해당 송풍기에 모두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고장 등을 대비하여 설치한 예비용 송풍기 제외)

2) 차압계

- ① 차압계는 방지시설 외부 벽면 중 차압값을 확인하기 용이한 위치에 부착 및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함
- ② 차압 측정용 관(Tube)은 집진 필터 또는 흡착제의 전단과 후단에 대한 압력값 차이(차압)를 측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및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함
 - 차압 측정용 관(Tube)은 작업 및 장비 이동 시, 파손의 우려가 없고 막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천공 부위는 기밀이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함

3) 온도계

- ① 온도계의 센서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유입부(전단) 덕트의 중앙부분에 부착 및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함
 - 방지시설 유입부(전단)에 덕트가 없거나, 덕트에 온도계 센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유입부(전단)의 대표가 되는 지점에 설치가 가능 함
 -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온도계 센서의 고장·파손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온도 측정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온도계 센서에 보호 캡의 설치가 가능 함
- ② 온도계 센서를 설치한 덕트의 천공 부위는 기밀이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함
- ③ 온도계 부착 대상 방지시설이 연결되어(여과 → 여과, 여과 → 흡착, 흡착 → 여과, 흡착 → 흡착 등) 있으며, 방지시설별로 유입되는 배출가스의 온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전단에 위치한 방지시설의 유입부(전단) 덕트에만 온도계 설치가 가능 함

4) pH계

- ① 흡수에 의한 시설의 pH계는 흡수액 탱크에 부착 및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흡수액 탱크의 천공 부위는 기밀이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함
- ② pH계의 센서는 흡수액 탱크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함
 - 저수위 등을 고려하여 탱크 바닥 및 벽면으로부터 5cm ~ 10cm 떨어진 곳에 위치
 - 약품 투입에 따른 pH값의 변화를 고려하여 약품 투입구와 최대한 먼 곳에 위치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

1) 게이트웨이 사양

- ① 디스플레이를 통해 측정값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함
- ② 시계 내장형(RTC)으로 재부팅 시, 시각이 초기화되는 현상 없이 기본 시간 정보를 유지하여야 함
- ③ Gateway 전면에 설치 업체명과 고장 시 조치가 가능한 업체의 연락처, 그린링크(www.greenlink.or.kr)를 표시하여야 함
- ④ 복수 골뚝 Gateway는 '복수 골뚝 전용' 및 '설치한 전체 골뚝 번호'를 Gateway 전면에 표시하여 다른 Gateway와 구분하여야 함

2) 부착 위치 및 방법

- ① 유선의 경우, 사업장 인터넷망 설정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② 무선의 경우, 데이터의 송·수신이 원활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 ③ 가능한 전원의 상시 공급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 ④ 햇빛, 비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⑤ 사업장 담당자의 조치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 ⑥ Gateway는 사업장당 1개 설치를 권장하며, 사업장 여건상(배출구 이격거리가 큰 경우, Gateway 호환 불가능, 5개 이상 복수 골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설치가 가능 함

다. 가상사설망(VPN)

- ① IT보안인증사무국(ITSCC)에서 CC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 ② 한국환경공단 VPN 센터 장비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③ VPN 네트워크 설치 시, Gateway 설치 업체는 IP 등 보안 관련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④ VPN은 사업장당 1개 설치를 권장하며, 사업장 여건상(배출구 이격 거리가 큰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설치가 가능 함

라. 통신프로토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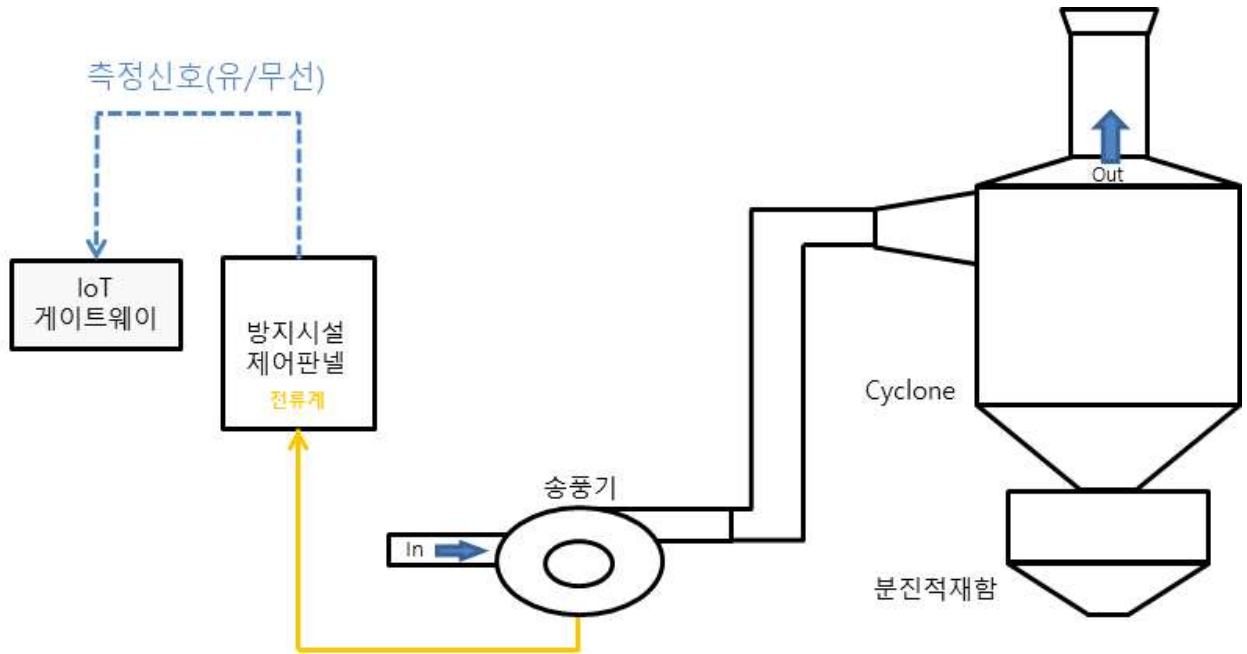
- ① 그린링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는 Version 3.0 이상의 통신프로토콜이 적용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를 신규로 부착 및 운영하여야 함[그린링크 전송 확인서(서식 2) 사용]

마. 게이트웨이 제조사 및 설치업체(협력업체) 운영·관리

- ① Gateway 제조업체는 설치업체(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일정 기간(1년 이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유지보수(A/S)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② Gateway 제조업체는 설치업체(협력업체)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A/S) 등과 관련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함
 - ③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에 대한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를 측정기기 설치 전에 사물인터넷 관제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 Gateway 제조·설치업체별로 설치할 측정기기의 모델을 기준으로 함
(측정기기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대표로 받은 것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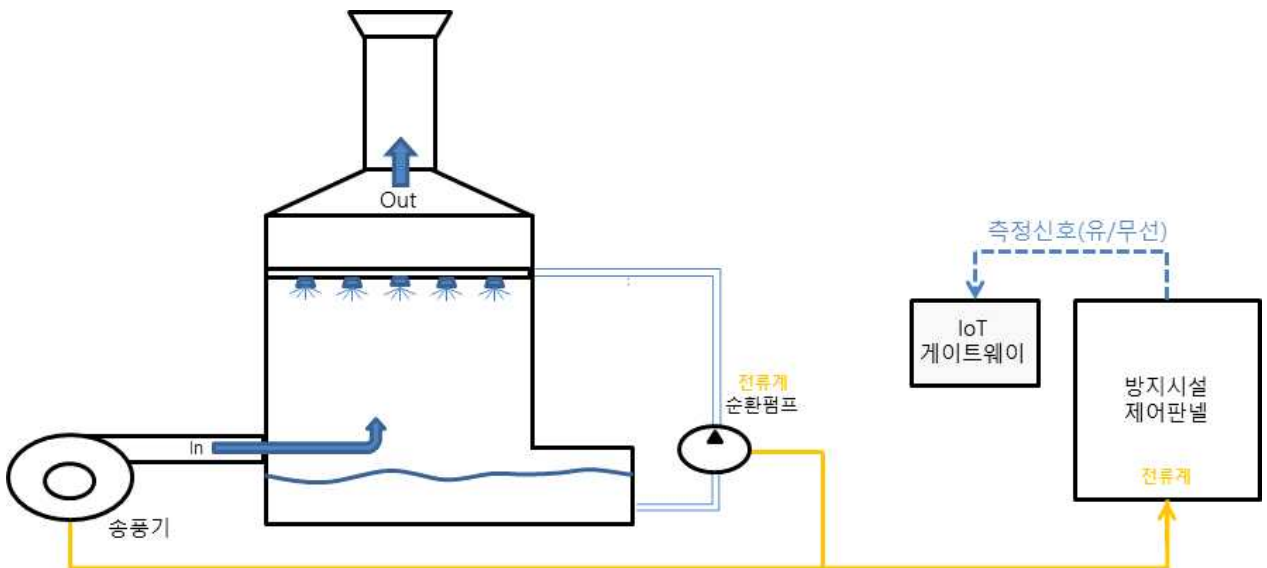
바. 방지시설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위치(예시)

1) 원심력 집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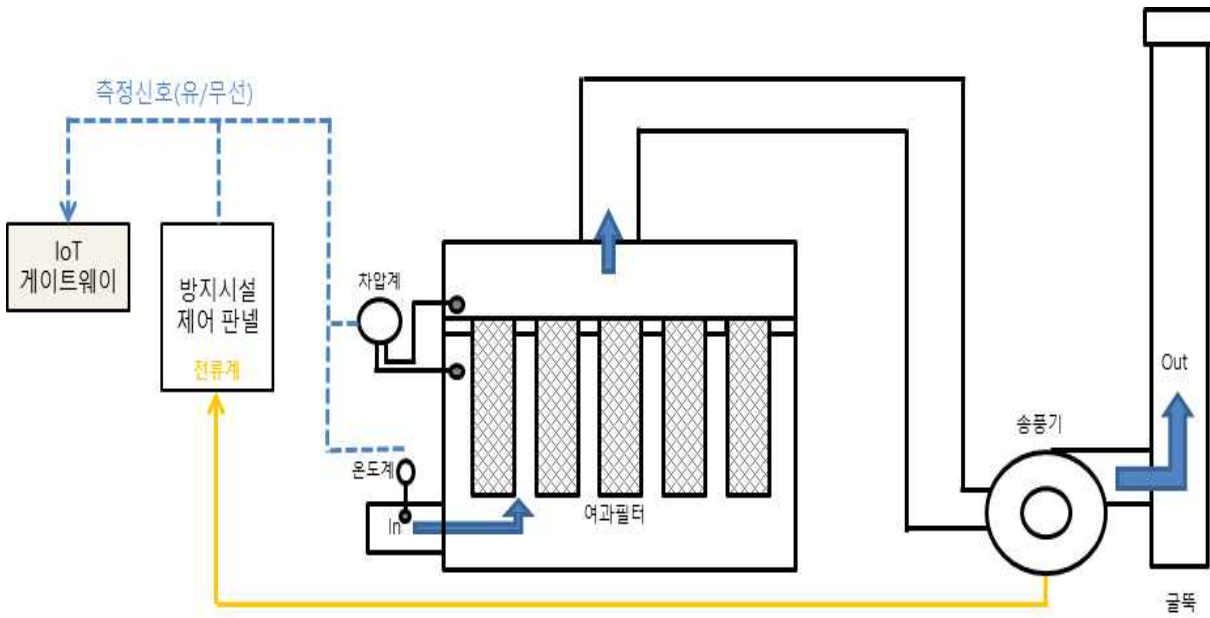
- 방지시설 가동정보: 송풍시설 전류값(A)

2) 세정집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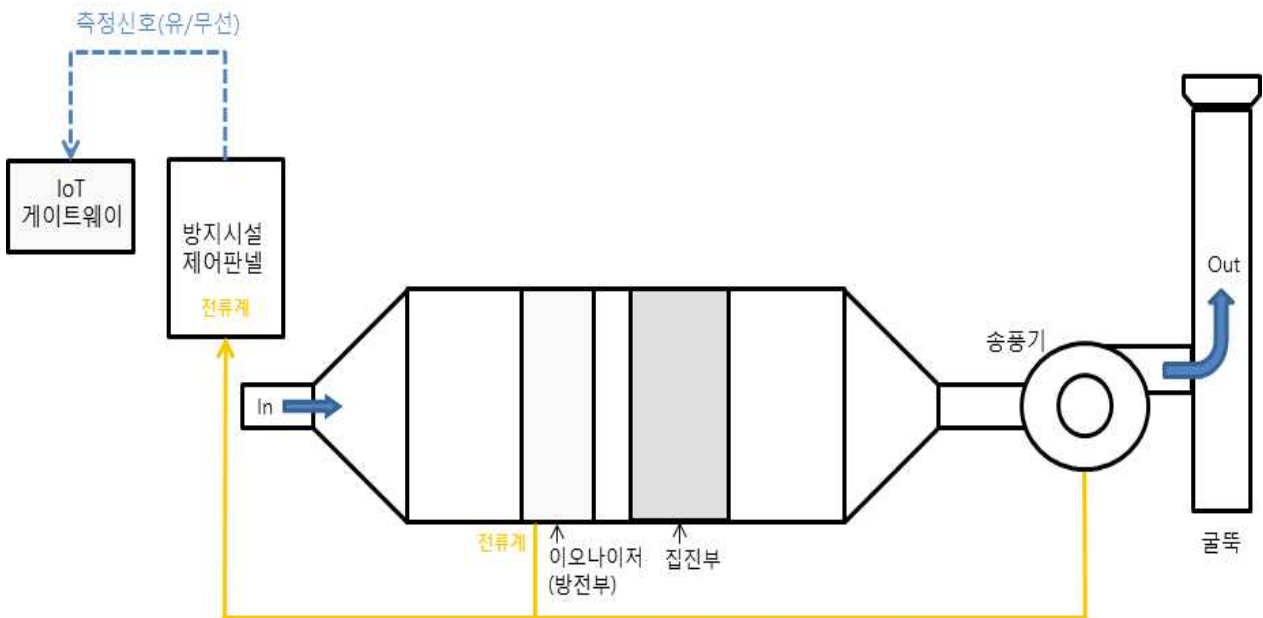
- 방지시설 가동정보: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순환펌프 전류값(A)

3) 여과집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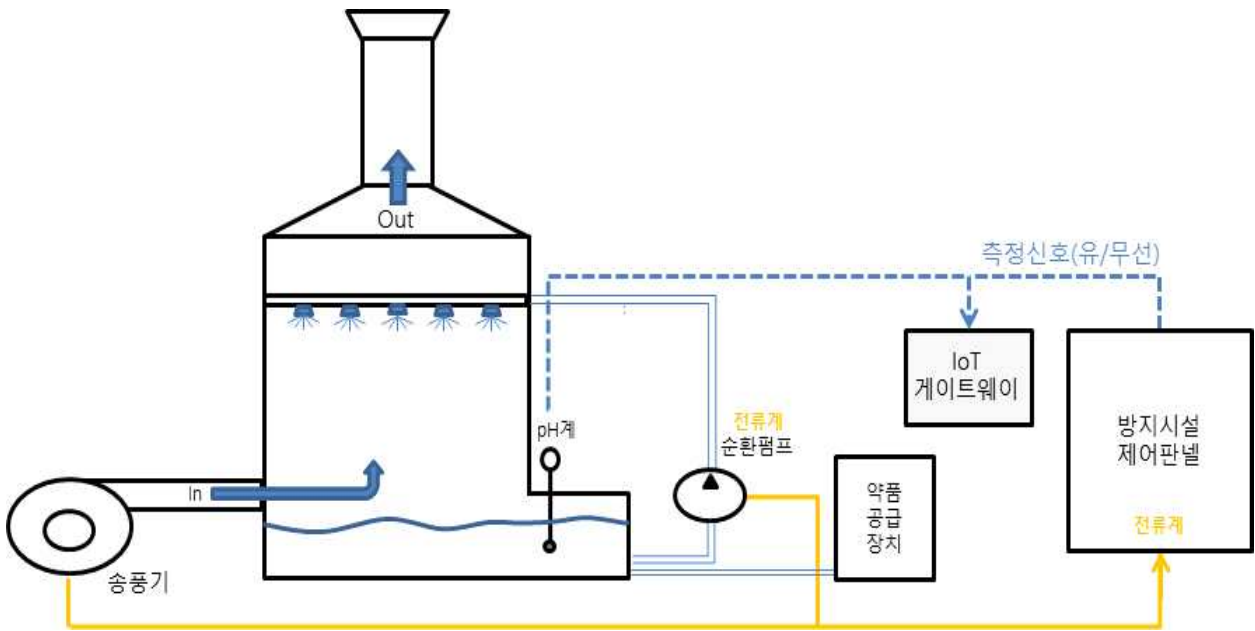
- 방지시설 가동정보: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차압값(mmH₂O), 온도값(°C)

4) 전기집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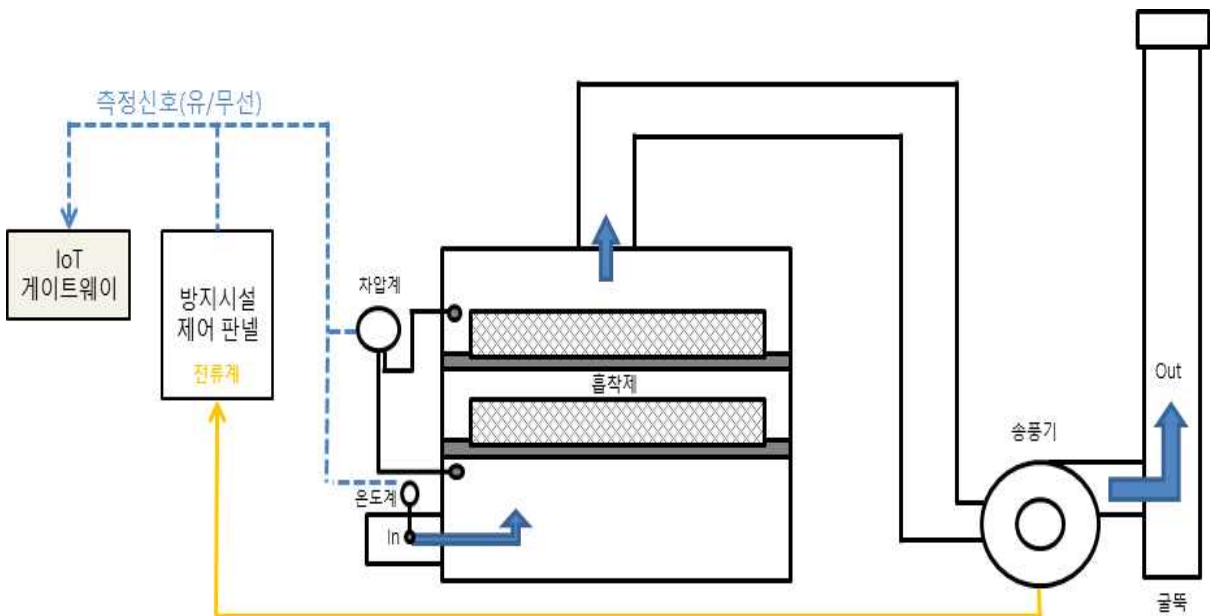
- 방지시설 가동정보: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고전압 발생기 전류값(A)

5) 흡수에 의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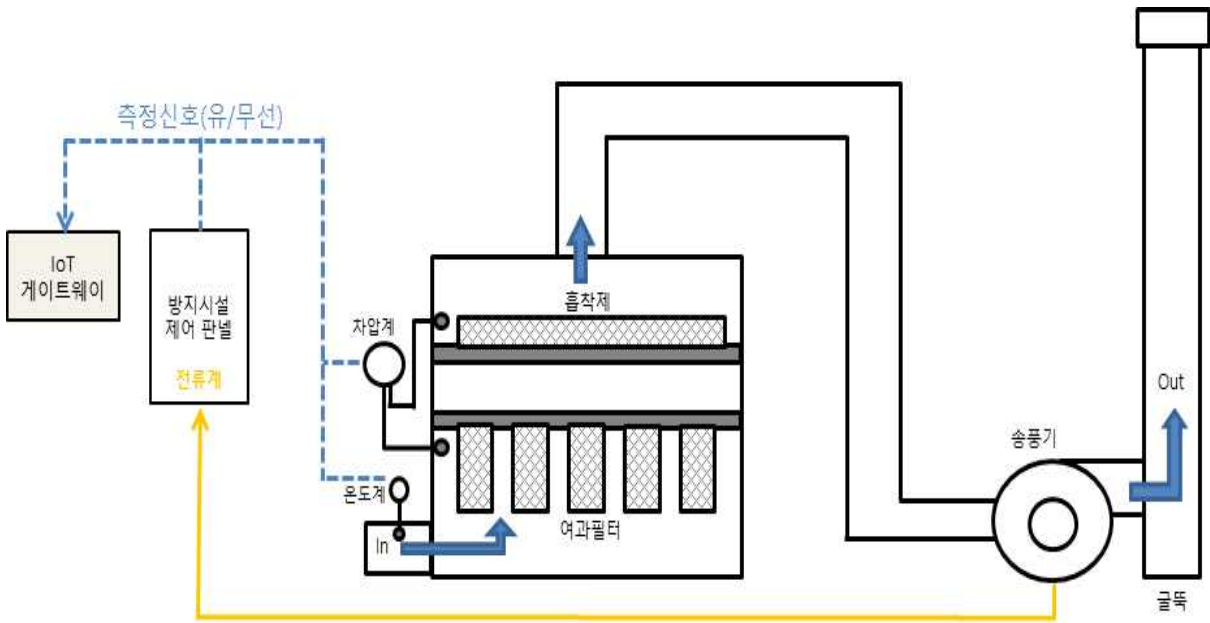
- 방지시설 가동정보: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순환펌프 전류값(A), 흡수액 pH값

6) 흡착에 의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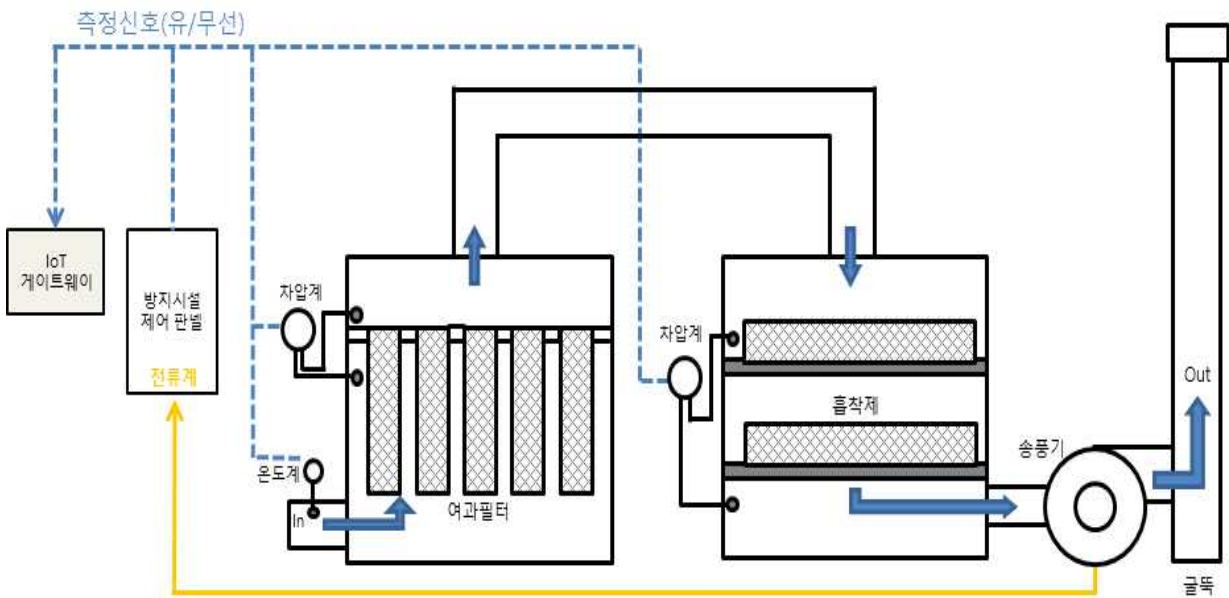
- 방지시설 가동정보: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차압값(mmH₂O), 온도값(°C)

7) 여과집진시설 및 흡착에 의한 시설(일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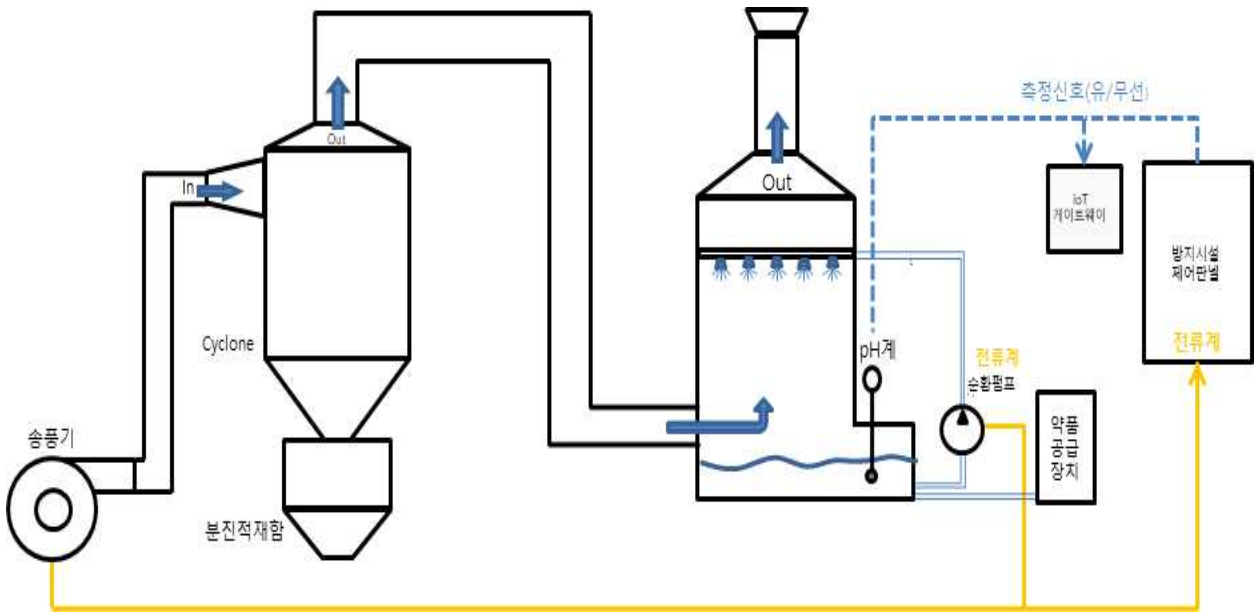
- 방지시설 가동정보: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차압값(mmH₂O), 온도값(°C)

기타 1) 여과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직렬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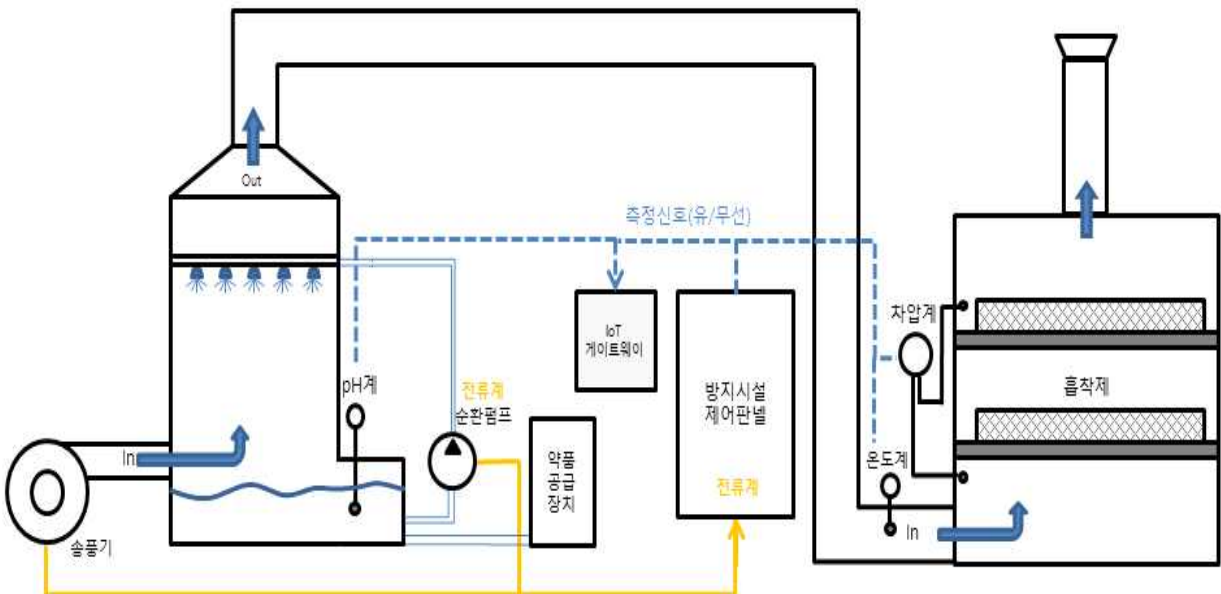
- 방지시설 가동정보: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차압값(mmH₂O), 온도값(°C)

기타 2) 원심력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직렬 연결)



- 방지시설 가동정보: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순환펌프 전류값(A), 흡수액 pH값

기타 3)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직렬 연결)



- 방지시설 가동정보: 송풍시설 전류값(A)
- 방지시설 상태정보: 순환펌프 전류값(A), 흡수액 pH값, 차압값(mmH₂O), 온도값(°C)

6.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유지·관리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유지·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 1)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2)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해야 함

* 5분 또는 30분(23.7.1 이후) 측정자료 전송, 고장 및 장애 등으로 인한 덤프 자료는 상시 전송으로 인정(사업장은 과전류 등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차단기 등 설치)

- 3)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고장 등의 사유로 교체 또는 수리할 경우 사전에 교체(수리) 계획을 그린링크에 작성하고 자체개선계획서(서식 4)를 제출해야하며,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자: 그린링크(www.greenlink.or.kr) 접속 및 로그인 → “실시간수신 자료 조회 바로가기” → “행정자료” → “자체개선계획” → “자체개선계획 사항” 작성(사업장 ID, 사업장명, 작성자, 제목, 내용 등), 첨부파일[자체개선계획서, (서식 4)] 추가 → “저장” → “제출”

※ 지자체: 그린링크(www.greenlink.or.kr) 접속 및 로그인 → “실시간수신 자료 조회 바로가기” → “행정자료” → “자체개선계획” → “조회” 후 자체개선 계획 확인

(가) 그린링크(www.greenlink.or.kr) “접속” 및 “로그인”



(나) “실시간수신 자료조회 바로가기”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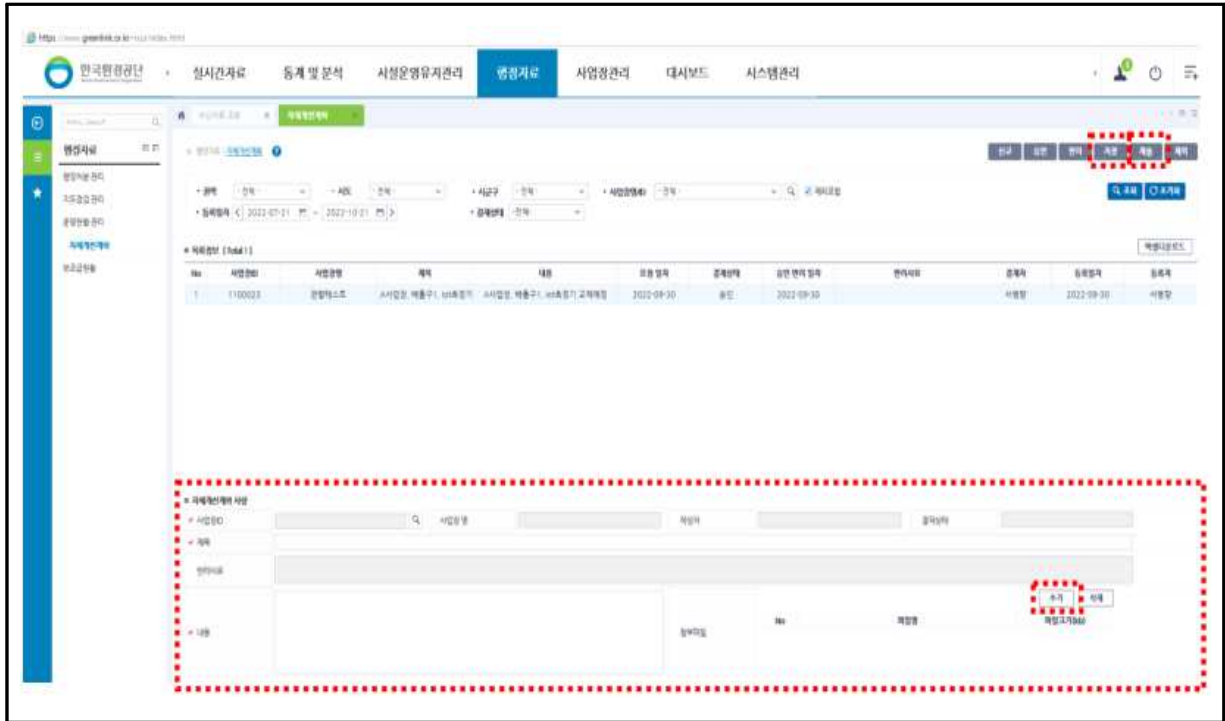
(다) “행정자료”클릭



(라) “자체개선계획”클릭



(마) “자체개선계획 사항”작성(사업장 ID, 사업장명, 작성자, 제목, 내용)
 → 첨부파일(자체개선계획서) 추가, 저장, 제출



(바) 자체개선계획 확인(해당 지자체 담당자)
 - “조회” 및 자체개선계획 확인



- ※ “반려” 필요시 지자체 등은 반려 사유를 입력하여 “반려” 처리 가능
- ※ 지자체가 자체개선계획을 확인한 경우 사업장 담당자에게 SMS가 발송됨
 (예시)“사업장명(사업장 ID) 사업장 자체개선계획사항 제출 건이 [확인/반려] 되었습니다.”

4)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개선을 완료하면 개선 내용을 그린링크에 작성하고 자체개선완료 보고서(서식 5)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개선 완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자: 그린링크(www.greenlink.or.kr) 접속 및 로그인 → “실시간수신 자료 조회 바로가기” → “행정자료” → “자체개선완료” → “자체개선완료 사항” 작성(사업장 ID, 사업장명, 작성자, 제목, 내용 등), 첨부파일[자체개선완료 보고서(서식 5)] 추가 → “저장” → “제출”

※ 지자체: 그린링크(www.greenlink.or.kr) 접속 및 로그인 → “실시간수신 자료 조회 바로가기” → “행정자료” → “자체개선완료” → “조회” 후 개선 완료 여부 확인

※ 지자체가 개선 완료여부를 확인한 경우 사업장 담당자에게 SMS가 발송됨 (예시)“사업장명(사업장 ID) 사업장 자체개선완료 사항 제출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록] 관련서식 및 참고자료

【서식 1】

등록번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제 호								
통	①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보	②대표자							
인	③주소	(전화번호:)						
④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업종								
⑦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개선)완료일		년 월 일						
⑧부착(개선) 내역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전류계 수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	방지	송풍			
⑨부착면제 내역	배출시설명	면제항목		면제사유				
<p>「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개선)을 완료하였기에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보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귀하</p>								
※ 구비서류 :							수수료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1부.							없 음	
2.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 1부.								
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전류계: 배출시설	전류계: 방지시설
차압계(압력계)	온도계
pH계	기타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부착 면제시 작성)

배출시설(전류계), 방지시설(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부착 면제 사유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

(덧붙임)

그린링크 전송 세부 내용

관리번호: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관할지자체	
배출구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업종	
주소			

○ 배출구 정보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배출구직경	가동개시일자	신설일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현황

○ 게이트웨이 현황

제조사	모델명	통신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게이트웨이IP

○ 배출/방지/송풍시설 현황

- 시설 현황

No	배출구 번호	시설 코드	시설명	분류	용량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대상	가동 개시일자	신설일자
1	1	E3501	배출1	35) 도장시설	86.3 m ³	F0001		2020-01-01

- 시설종류별 측정기기 부착현황

시설구분	시설명	종류	측정항목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시설	배출1	도장시설	1	1	1	1
	배출2	도금시설	1	-	-	1
방지시설	방지1	여과/흡착	1			
	방지2	흡수에 의한 시설	1			
송풍시설	송풍1	송풍(ID fan)	1			
	송풍1	송풍(ID fan)	1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점검기간		
점검결과	서버전송일 (최종 합격일자)	점검시점	점검기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 시스템 전송테스트 세부 내역

○ 실시간 자료 전송 : 정상/비정상

자료전송 정상여부	2023.07.01.		2023.07.02.		2023.07.03.		2023.07.04.		2023.07.05.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5분										
30분										

※ 점검기간 중 1일 기준 전체 데이터 5분자료 ((288건, 전송률(100%)), 30분자료(48건, 전송률(100%))를 전송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 원격명령 점검결과 : 정상/비정상

No	코드	원격명령 시험내용	점검일자	점검결과	비고
1	PDUH	저장자료 요청	2023.07.01.	정상/비정상	
2	PFST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3	PCN2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정상/비정상	
4	PSEP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정상/비정상	
5	PUPG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정상/비정상	
6	PVER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정상/비정상	
7	PSET	수동 시간 설정		정상/비정상	
8	PFCC	시설코드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9	PAST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0	PFGR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정상/비정상	
11	PFRS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정상/비정상	
12	PRSI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3	PDAT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4	PODT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정상/비정상	
15	PRBT	GW 장비 재가동		정상/비정상	

○ 배출시설별 설정정보 일치성 : 정상/비정상

시설명	계측기	개수	게이트웨이 설정값			GreenLink 등록값			점검 결과	비고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배출1	전류계	1							정상 / 비정상	
방지1	차압계	1							정상 / 비정상	
방지2	pH계	1							정상 / 비정상	
송풍2	전류계	1							정상 / 비정상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비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설정/미설정	정상/비정상	배출시설	E0000	배출1	송풍시설	F0001	송풍1

[참고사항, 예시] 사물인터넷측정기기(전류계) 부착면제 시설인 경우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배출시설 전류계 부착면제 시설							

【서식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보완 요구서		
통보인	사업장명	000000
	성명(대표자)	000
	사업장 소재지	000도 00시(군) 00로 000
	연락처	000-000-0000
보완이 필요한 사항		
<p>귀하께서 제출하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의 보완이 필요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요구하오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0000년 00월 00일</p> <p>담당자 직명 000 (서명 또는 인)</p> <p>(문의전화: 000 - 000 - 0000)</p>		

【서식 4】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신청인	사업장명	000000			
	성명(대표자)	000			
	사업장 소재지	000도 00시(군) 00로 000			
	연락처	000-000-0000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적정 운영(예정)일		0000년 00월 00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개선완료 예정일		0000년 00월 00일			
개선 내용	배출구 번호	기기명(부품명)	규 격	수 량	[] 결합내용 [] 고 장
	1	게이트웨이	00	00	고장 통신불량
		전류계	00	00	
		온도계	00	00	
		압력계	00	00	
		pH계	00	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항 다호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000		(서명 또는 인)	
귀하					

【서식 5】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보고인	사업장명	000000			
	성명(대표자)	000			
	사업장 소재지	000도 00시(군) 00로 000			
	연락처	000-000-0000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적정 운영(시작)일		0000년 00월 00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개선완료일		0000년 00월 00일			
부적정 운영 개선 내용	배출구 번호	기기명(부품명)	규 격	수 량	개선 내용
	1	게이트웨이	00	00	게이트웨이 교체 온도센서 교체
		전류계	00	00	
		온도계	00	00	
		압력계	00	00	
		pH계	00	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항 다호에 따라 제출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보고인		000		(서명 또는 인)	
귀하					

【참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체크리스트

1. 사업장 현황

사업장 명칭		사업장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연락처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종별		업종	

2. 사물인터넷 설치 현황

게이트웨이사(모델명)		유선/무선	
시설관계관리(배출구-배출시설-방지시설 연결구조)			<i>Type1</i>

※ Type1(기본구조), Type3(방지시설 직렬), Type4(방지시설 병렬),
Type5(분산 배출구 구조), Type6(방지시설 직렬·병렬)

배출구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 전류계	방지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현장 등록	현장 등록	현장 등록	현장 등록	현장 등록
<i>1</i>	<i>여과집진시설</i>	<i>전기집진시설</i>	/	/	/	/	/

※ 방지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RTO, RCO, SRC, 기타

기타 특이사항

3.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요확인사항	점검결과			
○ 측정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 시 부착 측정기기 값 변화 확인 ○ 각 배출시설 동작 시 전류값 변화 여부 확인	배출/방지 차압/온도/ pH			
○ 추후 점검을 위한 분전반 전류계 표식	○ 전류계에 배출·방지 등 표식 확인	예 / 아니오			
○ 시설관계관리 정상여부 확인	○ 측정기기 연결현황 파악	예 / 아니오			
○ 안정적 동작을 위한 설치위치 확인	○ 측정기기의 햇빛, 비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 ○ 측정기기의 측정값 확인 가능한 위치에 설치 확인	예 / 아니오			
○ 무선 LTE망 송·수신이 적합한곳 설치	○ 원격(버전정보 조회) 기능 수행	예 / 아니오			
	○ 원격(수동 시간설정) 기능 수행	예 / 아니오			
○ 디스플레이 측정값 표시여부 ('22업무처리 지침 15쪽)	○ 디스플레이는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조치가 가능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함	예 / 아니오			
○ 사업장 그린링크 가입여부	○ 사업장 담당자 가입 확인	예 / 아니오			
4. 특이사항 및 점검자 의견					
		20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